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박왕규 의원 등 8명
- 발의일자: 2023. 5. 26.(금)
- 회부일자: 2023. 5. 26.(금)
- 검토기간: 2023. 5. 30.(화) ~ 6. 5.(월)

2. 개정이유

- 달서구에 거주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기 정착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년부부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나. 제4조의 제목을 결혼친화도시로 하고, 매칭을 만남주선으로 변경함(안 제4조)
- 다. 결혼축하금 지원 등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의2부터 안 제5조의4까지)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축하금¹⁾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²⁾부부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청년부부의 달서구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인구유출 방지와 결혼친화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03년 30만 건에서 2022년 19만 건으로 11만 건이 감소하였고,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6.3에서 3.7로 2.6이 감소하고,
- 혼인연령은 2003년 남 30.14세, 여 27.27세(대구 남 29.90세, 여 27.33세)에서 2022년 남 33.72세, 여 31.26세(대구 남 33.63세, 여 31.22세)로 각각 3.58세와 3.99세가 증가하여,
-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00년 1.48명에 비해 0.7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결혼초기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결하고, 달서구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서 각각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두고 있고,

1) 현재 결혼축하금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거창군·산청군·진주시, 경북 성주군, 전남 고흥군·영광군·장성군·진도군·화순군, 전북 김제시·완주군·장수군, 충남 태안군 등이 있음.

2) 「민법」 제4조(성년)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08조(동의를 필요한 혼인)에서 미성년자가 혼인은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등을 살펴볼 때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연령의 하한을 19세로 하고, 연령의 상한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39세로 함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 등을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 일부개정조례안의 용어의 변경과 결혼축하금의 신설은 그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차. <생략>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략>